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39087(본소), 2019가단523548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변론 종결 2020. 4. 7.

판결 선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 취지

본 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대한 1,700만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1,700만 원 상당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수당환급채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1호증, 을 1 ~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는 2017. 9. 1. D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D으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당 등 선급금을 받은 후 보험계약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선급금 중 일부를 D에 반환(환급)할 의무가 있었고, D은 원고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 3) 원고는 2017. 10. 17.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작성 방식으로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기간(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중에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피보험자인 D에 대한 수수료(수당) 반환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보험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지급보험금과 지연손해금(2019. 7. 3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 2019. 8. 30.부터는 연 9%)을 상환받는 것이다. 원고는 2018. 4.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증한도액을 기존의 700만원에서 1,7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4) 원고는 D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9. 4. 29.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해촉되었고, 원고가 D으로부터 선급금 형태로 받은 수당 중 일부가 보험계약 미유지(실효, 해약, 해지 등) 등으로 인하여 환급 대상이 되었는데, 2019. 6. 21. 기준으로 환급금액은 24,916,788원에 이르렀다.
- 5) D은 원고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한도액인 1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7. 30. D에게 보험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7. 30. 보험금 지급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액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8.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10.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처럼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